KOSHA GUIDE

C - 83 - 2013

운영하여야 한다.

- (5) 크레인에는 낙뢰에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크레인 운전원은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(가) 크레인 운전은 지정된 운전원이 하여야 한다.
 - (나) 크레인 운전원의 개인보호구 및 장비는 무선조종기 조작장치와 간섭되 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 - (다) 크레인의 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 또는 변경해서는 아니된다.
 - (라) 크레인 사용시 급운전, 급정지, 급강하, 급상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(마) 크레인의 정격 인양하중을 준수한다.
- (7) 안전모, 안전대 등 근로자의 개인보호구를 점검하고 작업전에 보호구의 착용방법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중에는 착용여부 및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8) 본 공법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은 주기적으로 안전검검을 실시하여 이상 이 발견된 때에는 정상적인 장비로 교체하거나 정비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 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.
- (9) 위험기계·기구의 방호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.
- (10) 교각, 교대, 가교각 등에 설치되는 안전난간, 사다리 등의 안전시설은 고정 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(11) 단위 작업반 내에서 의사소통이 미흡한 경우 위험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작업반 구성시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되는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사전에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